

의안번호	2215824
의 퇴 인	김남근의원
회 답 일	2026.2.12.
추계번호	25D7412

집단소송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7조(소송비용의 지원)	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7조(소송비용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제정안은 국가가 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(안 제37조)

○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

- 집단소송의 절차로서 책임확인소송(손해배상 책임의 확인절차)과 채권확정절차(개별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채권 확정절차)(안 제2장 및 제3장)
- 책임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및 피고의 요건(안 제3조)
- 책임확인소송의 관할법원(안 제4조)
- 원고단체가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의 증명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정보제출명령(안 제6조)
- 책임의 존부 증명 또는 채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(안 제7조) 및 자료의 훼손 방지를 위한 자료보전명령제도(안 제12조)
- 당사자의 변호사 선임 명령(안 제14조)

- 책임확인소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신고피해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침(안 제16조)
- 국가의 소송비용 지원(안 제37조)
- 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,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, 2026년 예산 기준 대법원은 「소송구조 지원」(1161-301) 세부사업에 68억 5,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, 내역사업은 다음과 같음
-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

[표 1] 「재판절차비용지원」 사업 예산 편성 현황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내역사업	예산
일반소송구조지원	5,108
개인파산회생소송구조지원	1,749
합계	6,857

자료: 대법원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